

대한건축학회상규정

제1조(목적) 본 시상규정은 건축문화발전에 탁월한 공적으로 기여한 회원(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공헌을 찬양하고 진지한 연구, 창작, 실천을 권장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학회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의 종류 등) ①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6개 부문으로 구분한다.

1. 대상
2. 공로상
3. 공적상
 - 가. 학술상
 - 나. 기술상
 - 다. 작품상
 - 라. 교육상
4. 논문상
5. 특별상
 - 가. 남파(박학재)상
 - 나. 우당(신무성)상
 - 다. 소우(윤장섭)저작상
 - 라. 북암(김형걸)상
 - 마. 무애(이광노)건축상
 - 바. 과천(김진일)상
 - 사. 홍전(신현식)상
6. 기금상
 - 가. 이원상

제3조(부문내 중복수상의 금지) 상은 부문간의 중복수상을 가하나 부문내는 불가하다.

제4조(수상자격) 수상의 자격자는 학회상 추천 공고일 현재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대상 수상자격

본 회 정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건축에 관한 학술·기술·예술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, 가입한지 25년 이상인 자

2. 공로상 수상자격

다년간 본 학회 발전 또는 건축계에 기여한 공적이 특히 탁월한 자

3. 공적상 수상자격

가. 학술상

건축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저작 또는 발표를 하여 탁월한 공적을 이룩한 자

나. 기술상

건축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건축기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

다. 작품상

건축설계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탁월한 작품으로 그 공적이 현저한 자
라. 교육상

건축교육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

4. 논문상 수상자격

전년도,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및 Architectural Research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자

5. 특별상 수상자격

가. 남파(박학재)상

건축사 분야의 학술발전에 공적이 탁월한 자

나. 우당(신무성)상

건축행정에 공적이 있는 자

다. 소우(윤장섭)저작상

건축분야의 저작활동에 공적이 탁월한 자

라. 북암(김형걸)상

건축구조분야의 학술발전에 공적이 탁월한 자

마. 무애(이광노)건축상

건축계획설계분야와 건축공학분야 발전에 공적이 탁월한 만 49세 이하인 자

바. 과천(김진일)상

건축계획분야의 학술발전에 공적이 탁월한 자

사. 홍전(신현식)상

건축시공분야의 학술발전에 공적이 탁월한 자

6. 기금상 수상자격

가. 이원상

친환경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였거나, 학술발전에 공적이 탁월한 자

제5조(상의 수) 수상자의 수는 상의 종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1. 대상 : 1인

2. 공로상 : 5인 이내 <2022.4.15. 개정>

3. 공적상 :

가. 학술상 15인 이내

나. 그 외 공적상 각 세부문별 10인 이내

4. 논문상 :

가.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개 분야별 총 8편의 저자

나. Architectural Research 전 분야에서 1편의 저자

다. 가목의 8개 분야는 논문상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준한다. <2022.4.15. 개정>

5. 특별상 : 특별상 각 세부문별 2인 이내

6. 기금상 중 이원상 : 2인 이내

7. 수상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수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6조(상의 내용) ① 상은 상폐 및 부상으로 한다.

② 대상, 특별상 및 기금상의 부상은 기금 원금의 당해년도 발생 과실금 범위 내에서 정한다.

③ 단, 기금상은 학회의 책임하에 운영하며 기탁자에게 매년 운영결과를 알린다.

제7조(수상후보자의 추천자격) 수상후보자의 추천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, 최대 3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. 단, 공로상은 학회상 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하며, 논문상은 논문상후보심사위원회에서 논문상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추천한다.

1. 학회의 임원

2.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

3. 공인된 학술단체, 기술단체 또는 연구소의 장

4. 특별회원 단체의 장

제8조(추천접수기한 및 접수방법)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매년 3월 첫째주 목요일에 마감하며, 대한건축학회 학회상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도록 한다.

제9조(추천서류)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추천이유서 1부

2. 피추천자의 약력서 1부

3. 피추천자의 업적 및 공적 증빙자료(저서, 논문, 작품 등) 각 1부

②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단, 제1항제3호의 증빙자료는 피추천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.

제10조(예비선정위원회 및 선정위원회) ① 수상예정자의 선정을 위하여 예비선정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둔다.

② 예비선정위원회는 각 학회상에 추천된 후보자들의 자격과 업적을 심사하여, 수상예정후보자를 선정위원회에 추천한다.

③ 대상의 경우는 선정위원회에서 추가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
④ 선정위원회는 수상예정자를 결정한다.

제11조(수상자의 선정절차) ① 선정위원회는 수상예정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.

② 수상예정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수상자로 확정된다.

③ 확정된 수상자는 본인에게 통지하고 본 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제12조(선정위원회의 운영) 선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운영규약을 정한다.

제13조(시상) 상의 시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본 회 총회에서 이를 행한다. 단, 수상자가 시상식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을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본 회에 귀속시킨다.

부칙

1. 수상예정자 선정에 관한 회의는 일절 비공개로 하며 발표하지 아니한다. 단, 선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선정위원 이외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2. 수상예정자 선정에 관한 여하한 항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.
3. 수상예정자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총회개최 공고시에 행한다.
4. 이 규정은 196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196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6. 이 규정은 197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7. 이 규정은 198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8. 이 규정은 198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9. 이 규정은 199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10. 이 규정은 199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11. 이 규정은 199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12. 이 규정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13. 이 규정은 200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14. 이 규정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15. 이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16. 이 규정은 200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17.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18. 이 규정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19. 이 규정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20. 이 규정은 201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21. 이 규정은 201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22. 이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23. 이 규정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24.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25. 이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단, 2019년 학회상 수상후보자 추천접수기한은 3월 15일로 한다.
26.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27. 이 규정은 2022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28. 이 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